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11.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평화 통일비전 마련을 위해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 ~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73”을 “271”로, 일반직 계 “269”를 “267”로, 3급 또는 4급 이하 “251”을 “24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9”를 각각 “167”로, 3급 또는 4급 이하 “165”를 “163”으로 한다.

별표 4 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및 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통일기획관) ① 통일정책 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u>2024년 12월</u> <u>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 로 통일기획관을 둔다. ② ~ ④ (생략)	제38조(통일기획관) ① ----- ----- ----- ----- <u>2026년 12월 3</u> <u>1일</u> ----- -----.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과) ① 통 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 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4년 1</u> <u>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통일미래추진과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과) ① -- ----- ----- ----- <u>2026년 12</u> <u>월 31일</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73</u>		<u>271</u>	-2	
	.		.		.		
	.		.		.		
일반직	계		<u>269</u>		<u>26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1</u>		<u>249</u>	-2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9	167	-2
일반직 계	169	167	-2
3급 또는 4급 이하	165	163	-2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u>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u>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u>	
·	·	·	
·	·	·	
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u>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u>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